

#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
------	----

제출일자 : 1998. 7. 11.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 ■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와 대체재산 조성을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할 경우에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원활을 기하고,
-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인하여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제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

## ■ 주요골자

-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허용(안 제21조제8호)
  - 아파트형 공장용지
  -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 중소기업자의 개발용지
  -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의 공장용지
- 대체재산 조성을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서 매각대금의 일시납부가 곤란할 경우 분할납부 허용(안 제21조제9호)
-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사용요율 인하(안 제22조제6항)
  - '81. 4. 30. 이전 주거용 건물 25/1,000
  - '81. 4. 30. 이후 주거용 건물 50/1,000
  - ⇒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25/1,000

## ■ 개정근거

- 내무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준칙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00조제1항의 단서규정

##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8호내지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 대체재산 조성에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22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⑥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2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생략 1호 내지 7호 (생략) 《 신 설 》</p> <p>《 신 설 》</p>	<p>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생략 제1호 내지 제7호 (현행과 같음)</p> <p>8. <u>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및 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u></p> <p>9. <u>대체재산 조성에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경우</u></p>
<p>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생략 ① 내지 ⑤ (생략) ⑥ <u>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한다.</u> ⑦ (생략)</p>	<p>제22조 (현행과 같음) ① 내지 ⑤ (현행과 같음) ⑥ <u>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25로 한다.</u>  ⑦ (현행과 같음)</p>